##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53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백선희·정춘생·이춘석

허 영 • 윤종군 • 이수진

황운하 · 위성곤 · 김 윤

박은정 · 송기헌 · 김준형

차규근 • 신장식 • 서왕진

김선민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군사훈련
-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토에 대한 적(敵)의 위해행위로서 「통합 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 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660條(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 第660條(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
| 免責)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 免責)               |
| 變亂으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                   |
|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     |                   |
| 면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     |                   |
| 할 責任이 없다. <단서 신설>   | <u>다만, 보험사고</u>   |
|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u> &lt;신 설&gt;</u> | <u>1. 군사훈련</u>    |
| <u> &lt;신 설&gt;</u> |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토에 |
|                     | 대한 적(敵)의 위해행위로서   |
|                     |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
|                     |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
|                     | 아니하는 행위           |